

2008. 12. 8(월) ~ 12. 11(목)

제15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08. 11. 14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8. 11. 19
- 의안번호 : 제2008 - 55호

2.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기금운용 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운용계획안			2009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차액(적립)	
2 건	1,655,223	932,426	892,901	39,525	1,694,748
중소기업육성기금	813,837	539,064	52,901	486,163	1,300,000
재난관리기금	841,386	393,362	840,000	△446,638	394,748

4. 전문위원 검토의견

<경제과 소관>

□ 중소기업육성기금(p46)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 2005년도 6월 설치되어 적립목표액은 50억원으로서 200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52,901천원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재난관리기금(p50)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41,386천원과 도비 보조금 230,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30,000천원, 이자수입 33,362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동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380,000천원과 자동경보장치우량국 설치 460,000천원임.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